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-2호

「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월 24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사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"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"을 제정(2022.1.6.)함으로 인해, 기 제정되어 있는 "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"이 **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**

2. 주요내용

○ 「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

3. 폐지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2. 1. 24.~1. 29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. 1. 29.(토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